

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해촉)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고가 있는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5

2001년 6월 일
건설위원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	입찰안내서 심의	800,000원	800,000원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심의 또는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신설)	2개업체 응찰시	3,000,000원	4,000,000원
		3개업체부터 4개업체 응찰시	4,500,000원	6,000,000원
		5개업체부터 6개업체 응찰시	6,000,000원	8,000,000원
		7개이상 업체 응찰시	7,500,000원	10,0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
-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 지난 '89.12.18 조례제정이후 9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흐트러진 조문 구성체계를 일목 요연하게 재정리하고
 -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의 확대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 안 제1조(목적)의 내용중에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추가한 것은 그 동안 본위원회가 사실상 수행하여 온 "설계자문"기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3조(기능)제1항 각호에서 "환경성"과 "신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이의사항 제기"의 견을 심의 검토항목 및 대상으로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상수도사업본부"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5조(소위원회)에서 종래 조문을 달리하고 있던 "심의 및 자문소위원회"운영규정을 일원화하고 위원장이 정하도록

- 되어 있던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술심사담당관"이 확일적으로 맡아오던 "소위원회"위원장을 소위원회별 특성과 안건의 성질에 따라 시 또는 시소속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달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다양한 검토대상 분야별로 심사위원의 확대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대단위공사 적격심사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영 제12조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인원과 일치시켜 "5인 이상 15인이내"를 "5인 이상 30인이내"로 각각 규정한 것은 소위원회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안 제6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에서 위원회심의 및 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 안 제7조(심의 자문요청 등) 및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통보)에서 안건별 특수성과 일부 적용법규의 상이함 등에 따라 확일적 규정이 어려운 세부심의 및 자문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영 제13조에 의한 중앙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고려하여 "안건별 심의 및 자문요청 구분과 부의 안건의 처리기간"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서 종래 위원장이 사안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심의 및 자문사항 “사후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사후평가단”구성과 운영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별표에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산출기준”을 일부 보완 조정한 것은 “대안입찰 및 설계적격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수수료 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일괄 입찰공사 등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조정》

1. 조정기준

-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수수료 산출근거 규정마련
- 건설환경 변화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여 “심의수수료 산출기준” 조정

◎현행 기준은 '97년 건설교통부의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온 것으로 그 이후의 건설기술심의와 관련한 건설환경변화 등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고 있지 않음.

◎산출공식

- 평균인원 × (검토일수 × 검토단가 + 참석수당)
- 검토단가
 - 일괄입찰 기본설계 및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 100,000원/일
 - ※특급기술자 노임단가의 50%수준 : 기타, 심의시 보다 검토 도서의 양 등이 2배이상 수준임.
 - 기타 심의(현행유지) : 50,000원/일
- 검토일수(입찰참여 업체수 기준)
 - 1 ~ 2건 : 1일 3 ~ 4건 : 2일
 - 5 ~ 6건 : 3일 7건 이상 : 4일
- 참석수당 : 50,000원/회(행자부예산편성 기준)
 - 일괄입찰 기본설계 및 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 2회 참석
 - 기타 심의 : 1회 참석

2. 수수료 산출기준 조정 내용

구	분	현	수	비	
		행	수	고	
			료		
			(
			1		
			건		
			당		
			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5항 심의사항	입찰안내서심의	800,000원	800,000원	8인×1일×100,000원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심의 또는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신설)	2개업체 응찰시	3,000,000원	4,000,000원	20인×(1일×100,000원+100,000원)
		3개업체부터 4개업체 응찰시	4,500,000원	6,000,000원	20인×(2일×100,000원+100,000원)
		5개업체부터 6개업체 응찰시	6,000,000원	8,000,000원	20인×(3일×100,000원+100,000원)
		7개업체이상 응찰시	7,500,000원	10,000,000원	20인×(4일×100,000원+1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8인×1일×1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8인×1일×100,000원	

3. 2000년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징수 실적

수 납 일 자	수 납 액(원)	납 부 자	비 고
계	6,400,000		
2000. 02. 25	800,000	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	
2000. 05. 02	800,000	관악구청장 김희철	
2000. 05. 15	800,000	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	
2000. 05. 15	800,000	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	
2000. 10. 27	800,000	양청구청장 허완	
2000. 11. 30	800,000	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	
2000. 12. 11	800,000	강남구청장	
2000. 12. 28	800,000	지하철공사사장 김정국	

종합의견입니다.

○ 지난 '89년 조례제정이후 수 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된 본 조례의 구성체계를 일관성 있게 재정리하고, 심의 및 자문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일원화하였으며, 그 구성인원을 현실성 있게 확대 조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안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리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위원의 회피 및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심의 및 자문대상 안전별 특수성과 일부적용 법규의 상이함 등으로 획일적 규정이 어려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 "안전별 심의 및 자문요청 구분과 심의기간 및 심의절차"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칙마련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2
----------	-----

2001년 6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석효 건설국장)

제안이유

-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감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교통카드판매대)에 대한 점용허가기한 등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 한하여 점용허가 하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도로점용허